

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항우연, 누리호 기술이전 계약 체결

우주 정의훈_02)368-6170_uihoon0607@eugenefn.com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항우연, 누리호 기술이전 계약 체결

지난 25 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으로부터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II)'의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2 년까지 누리호를 직접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했으며, 이에 대한 기술 이전료로 항우연에 240 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술 이전 대상에는 누리호 설계, 제작, 발사 운영 등 발사체 개발 전 주기 기술이 해당되며, 누리호 발사대와 추진 및 엔진 시험설비 기술 그리고 참여업체별 고유 기술 등은 제외됐다. 단, 여전히 누리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항우연이 갖고 있으며, 통상실시권에는 독점권이 배제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게도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

누리호는 2021 년 1 차 발사에서 목표 고도에는 도달했지만, 위성 궤도 안착에 실패했다. 이후 2022 년 2 차 발사에서는 위성모사체 및 성능검증위성의 목표 궤도 안착에 성공했으며, 2023년 3차 발사에서는 차세대소형위성 1기와 큐브위성 7기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다. 3차 발사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돼 제작 주관과 총괄 관리를 수행했다. 현재 정부가 계획한 남은 누리호 발사는 총 세 번으로 올해 11 월과 내년 상반기 각각 누리호 4, 5 차 발사를 앞두고 있으며 2027 년 마지막 발사가 예정돼 있다.

발사대 등이 포함되긴 했으나 2010 년부터 2023 년까지 누리호 개발에는 국비 약 2 조원이 투입됐다. 이번 기술 이전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낮은 비용으로 의미있는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 물론 여전히 발사 단가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지기 때문에 상업 발사체로서의 한계가 있지만, 국내 주요 위성 발사 국책 사업 확보는 가능하다. 실제로 국방부가 누리호를 통해 국방 시험 위성 2 기를 발사하는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페어링 개량 등 누리호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발사체 사업에서도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돼 있어 향후 국내 우주 발사체 부문에서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입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한주 간 주요 뉴스

록히드마틴, 오리온 우주선을 상업 서비스로 제공할 가능성 시사

블루 오리진, 첫 블루 링 우주선 2026년 봄 발사 예정

NASA 직원 약 4,000명,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 신청

ULA, 벌컨 중심 체제로의 전환 속에 2025년 발사량 기대치 조정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네 번째 달 착륙선 계약 수주

도표 1. 누리호 구성

		페어링 - 비행 중 위성과 탑재물 보호 - 페어링 분리 후 지상거리 1,508 km 지점 낙하
		3 단(7 톤급, 1 기) - 길이: 7 km / 직경: 2.6 m 7 톤 엔진 1 기로 구성, 위성의 궤도 투입 고도까지 상승
		2 단(75 톤급, 1 기) - 길이: 15.6 m / 직경: 2.6 m 1 단 분리 후 75톤급 엔진 1 기 가동 약 240 km 까지 상승 후 단분리 및 낙하
		1 단(75 톤급, 4 기) - 길이: 23 m / 직경: 3.5 m 75 톤 엔진 4 기로 구성, 발사체 이륙 및 약 50 km 까지 상승 후 단분리 및 낙하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 누리호 개발 기술 이전계약 체결



자료: 언론 종합, 유진투자증권
주: (왼쪽부터) 이상철 항우연 원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도표 3. 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자료: 언론 종합, 유진투자증권

도표 4.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비교

종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정의	특허권자 등이 제 3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 지역, 내용 등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자 등이나 전용실시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
특징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u>허락 실시권</u>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u>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u> (특허법 제 101 조 제 1 항, 실용신안법 제 28 조, 디자인보호법 제 98 조제 1 항) 상표권은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u>독점력이 배제된 채권</u>으로 동일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을 <u>중복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u>. -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달리 <u>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u>(특허법 제 118 조제 2 항 제 3 항, 실용신안법 제 28 항, 디자인보호법 제 104 조제 2 항제 3 항, 상표법 제 100조제 1 항).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u>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함</u>

자료: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8%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2%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06.30 기준)